

전자금융 이체한도 추가약정서 (은행용)



「电子银行转账额度管理补充协议」

실명확인	담당자	확인자	승인자

(주)중국공상은행 앞

법인명 (企业名称)	사업자등록번호 (营业执照号码)
---------------	---------------------

제1조(목적) 전자금융 이체한도 추가약정서는 "기업인터넷뱅킹 서비스 신청서"에 추가하여, 은행에서 정한 전자금융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체한도 지정) 이체한도는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서비스 신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단, 기업인터넷뱅킹에 한하여 지정 가능하고, 금액 제한없이 지정 가능하다.

■ 이체한도 (转账额度)		
채널	1일 이체한도 (单笔转账限额)	1회 이체한도 (日转账限额)
기업인터넷뱅킹 (企业网上银行)	(한글) 원 (韩元)	(한글) 원 (韩元)

제3조 (약정기간) 추가약정한 이체한도는 고객의 이체한도 변경 시까지 유효하다. 다만,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초 추가약정일로부터 1년마다 신청인의 이체한도 초과 설정 유지 의사 및 필요성을 확인한다.

■ 신청내용 (申请内容)		
채널	약정 개시일 (协议开启日期)	약정 만료일 (协议到期日期)
기업인터넷뱅킹 (企业网上银行)	20 년 월 일	기간 제한 없음 (고객 이체한도 변경 시까지 유효)

제4조 (보안장치)본 추가약정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이 정한 보안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인의 의무)본 추가약정은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본 추가 약정이 필요한 사유를 은행에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은행으로 부터 이체한도 초과 설정에 따른 위험과 책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부정사용(가상자산 거래등을 통한 범죄 및 불법거래 목적의 거래대금 이체 보안장치 비밀번호 노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매체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및 면책)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책임 및 면책항목을 적용한다.

20 년 월 일

고객명 (客户名) _____ (인/서명)

대리인 (代理人) _____ (인/서명)